

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기관	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지체 없이
신고구분	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[] 체결 [] 변경 [] 해제			
	토지의 개량시설 설치 []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[]			

1. 신청인 인적사항

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· 외국인등록번호)		
주소	(전화번호:)		

2. 농지의 표시

일련 번호	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
	시·군	읍·면·동	리			

3.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·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

일련 번호	등록 구분	임대인(법인)		임차인(법인)			임차사항			비고 (사유)
		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주소	면적 (㎡)	임대료 (원/㎡)	임차기간	

4.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일련번호	등록 구분	소유자(소유법인) 사항		시설 사항	
		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설치시설	시설면적(㎡)

「농지법」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구청장·읍장·면장 귀하

첨부 서류	1.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(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·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진,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(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(신청인이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업무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